

대리점 계약서

공급자와 대리점은 아래와 같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.

계약 당사자

공급자 상호		대표자		사업자등록번호	
소재지		담당자		연락처	
대리점 상호		대표자		사업자등록번호	
소재지		담당자		연락처	

제 1 조 (목적)

본 계약은 공급자가 대리점에게 아래 상품의 판매를 위탁하고, 대리점이 이를 판매하는 데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대리점 지정과 판매지역)

공급자는 대리점을 아래 판매지역 내 독점 대리점으로 지정한다: 판매지역 —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.
대리점은 지정된 지역 외에서는 적극적인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다.

제 3 조 (공급가격과 결제)

공급가격은 공급자가 정한 공급가표에 따르며, 대리점은 매월 마감 후 익월 10 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한다.
공급가격 변경 시 공급자는 적용 30 일 전에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.

제 4 조 (최소 판매수량)

대리점은 매 반기 최소 1,000 개 이상을 판매하여야 하며, 2 회 연속 미달 시 공급자는 제 10 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 5 조 (판매촉진과 광고)

대리점은 공급자가 승인한 범위에서 판매촉진 활동을 할 수 있으며, 비용은 대리점이 부담한다.
공급자는 판매 실적에 따라 광고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.

제 6 조 (상표 사용)

대리점은 계약기간 중 공급자의 상표를 판매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, 계약 종료 시 즉시 사용을 중단한다.

제 7 조 (재고와 반품)

대리점은 적정 재고를 유지하며,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량품은 전액 반품·교환한다.
단순 재고 과다로 인한 반품은 공급자와 사전 협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.

제 8 조 (비밀유지)

당사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,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2 년간 유지된다.

제 9 조 (계약기간과 갱신)

본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 년으로 하며, 만료 30 일 전까지 별도의 서면 통지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 년씩 자동 갱신된다.

제 10 조 (해지)

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의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최소 판매수량 미달, 결제 지연이 2 회 이상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즉시 해지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손해배상)

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.

제 12 조 (관할법원)

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공급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제 1 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
특약사항

독점 공급 여부, 재고 인수 조건 등 추가로 합의한 사항을 기재하십시오.
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·날인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.

20 5월 10일 10시

공급자 : (서명 또는 인)

대리점 : (서명 또는 인)

※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. 중요한 거래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십시오.